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계약의 체결

제1조(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연 7.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4조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청약서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8.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위 10.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2.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하는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3조에서 정한 교통사고 로 보지 아니합니다.

1.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④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는 제25조 내지 제27조에 정한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견인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6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 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제9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을 하게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개시일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되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5.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의 5.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 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1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12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주기)

①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일시납, 6개월납, 3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의 납입주기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정이율<연6.5%>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5조에 규정된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4조에 규정된 계약자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자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

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6조(해지된 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부터 2년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해서 예정이율+1% <연7.5%>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제1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17조(보험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수 없습니다.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6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제2항 1.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2항의 1.에 의해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 2.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손해가 제2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계약취소권 등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

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되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제17조 제2항을 사유로 손해발생 이전에 해지된 경우에는【별표2】에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0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9조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1% <연7.5%>로 계산된 금액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②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의 경우 아래에서 정한 적용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1.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연 3.25%>, 1년 후부터 환급금 청구일 까지는 1%를 연단위 복리로 적용합니다.

손해의 발생

제21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3.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손해의 보상

제2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1,000만원(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2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1,000만원(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율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25조(벌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제3조 제1항의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6조(형사합의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제3조 제1항의 1.에 정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3】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8은 제외합니다. 이하 「중과실사고」라 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가 21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아래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사망 1인당	21일이상 진단(사망제외) 1인당
1,000만원	200만원

제27조(견인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의 제1항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견인비용 등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 상태이거나 피보험자의 운전회피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24조에 정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제23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5조 내지 제27조에 정한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견인비용은 각각의 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9조(보험금 등의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2.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4.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에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 <연7.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30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1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32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33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 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23조, 제24조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 밖의 사항

제34조(계약자 대출)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별표2】에 정한 해약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제35조(계약자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6조(청구권의 소멸시효)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약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다.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0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3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특별약관

1.가족 주말교통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자가용 운전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의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2.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④ 제1항,제2항,제3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2,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2,000만원(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율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5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 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 제4조의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33조에 정한 사유로 기본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가족 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비운전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의 제1항 2.,3.에서 정한 탑승중 교통사고 또는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3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2.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④ 제1항,제2항,제3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2,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2,000만원(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에 【별표1】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율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5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 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 제4조의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33조에 정한 사유로 기본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 제3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가족주말 교통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자가용 운전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의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50만원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3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777조)
2.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④ 제1항,제2항,제3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가족주말 교통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비운전자용)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의 2. 및 3.에서 정한 탑승중 교통사고 및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50만원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3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2.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④ 제1항,제2항,제3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 제3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추가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정한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율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5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 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 제4조의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되며, 보통약관 제33조에 정한 사유로 기본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교통상해 사망 · 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의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

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율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운전중상해 사망 · 후유장해 추가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의 제1항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율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의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에서 정한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소득보상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 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에 정한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 교통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의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교통상해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의 제1항의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5조의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차량손해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의 제1항의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자가용자동차(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합니다)에 전부손해(사고발생시 차량가액 기준)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자가용자동차를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차량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전부손해라 함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없어짐 또는 망가져서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리할 경우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차량가액이라 함은 사고발생 당시에 적용되는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5조의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면허정지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정지 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5조의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면허취소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5조의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생활안정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5조의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생활유지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입원 또는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유지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5조의 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7.상해 임시생활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5조의 제1항과 제2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8. 교통상해 임시생활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9.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를 말합니다)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3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율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영업용운전자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는 제5조, 제6조에 정한 벌금, 피해자 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1,000만원(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

는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율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5조(벌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제1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피해자 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제1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한 경우 1사고마다 사망피해자 각각에 대해 1,000만원을 피해자 사망시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적용특칙)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가입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상내용에 대한 효력은 상실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에서 정한 형사합의지원금, 견인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0-1.가족 주말교통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추가특별약관(자가용 운전자용)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는 영업용운전자 담보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제1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2.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④ 제1항,제2항,제3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1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2,000만원(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2,000만원(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율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 제5조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

기간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되며, 특별약관 제7조에 정한 사유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2.가족 주말교통상해 사망 · 후유장해담보 추가특별약관(비운전자용)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영업용운전자 담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제1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2.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④ 제1항,제2항,제3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1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2., 3.에서 정한 탑승중 교통사고 또는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2,000만원(이하「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2,000만원(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별표1】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 지급율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별표1】의 7,8,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6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 제5조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에 대한 회사의 보상책임은 소멸되며, 특별약관 제7조에 정한 사유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 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0-3.가족주말교통상해 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자가용 운전자용)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는 영업용운전자 담보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제1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2.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④ 제1항,제2항,제3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1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의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100만원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4.가족주말교통상해 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비운전자용)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영업용운전자 담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제1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 및 가족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배우자라 함은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 (민법 제 777조)
2. 피보험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④ 제1항,제2항,제3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1조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사고발생지의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의 2., 3.에서 정한 탑승중 교통사고 또는 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100만원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1.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 제3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0-5.면허정지 위로금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영업용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정지 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1사고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면허정지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특별약관 제2조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및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6.면허취소 위로금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영업용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면허취소 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특별약관 제2조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및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7.생활안정지원금 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영업용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구속기간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특별약관 제2조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및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8.생활유지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영업용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입원 또는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유지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특별약관 제2조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및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9.방어비용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영업용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특별약관 제2조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및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10.운전중상해 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영업용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운전중 상해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및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11.운전중상해 임시생활비 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영업용운전자담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피보험자가 특별약관 제1조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사고마다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행중 일당액을 임시생활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특별약관 제2조의 제1항
2.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 에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약관 및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1.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1.제1종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2.제2종단체(법정단체) : 제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등의 단체

3.제3종단체(규약단체) : 제1종 및 제2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및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해약환급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해약환급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2. 피보험자단체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정산한 날부터 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계약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적용보험료)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별 위험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적용하거나 단체의 평균연령 또는 평균급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료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우리 회사가 정한 날에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아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칙)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2.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3.계약순연부활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료의 미납으로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자가 해지일부터 2년이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일을 늦추어(이하「순연」이라 합니다) 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계약은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이미 보험금(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되는 생존급여금 포함) 지급사유가 발생된 계약
2.과거에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한 계약
3.납입일자를 기준으로 적립액을 계산하는 계약
4.순연된 계약일 시점에서 순연후 계약의 가입이 불가능한 계약
(계약일의 순연에 따른 가입연령의 변경으로 판매연령을 초과하는 계약 등)

5.세제와 관련된 계약으로 납입일, 납입기간등의 변경으로 세제혜택 대상계약에서 제외되는 계약

제2조(계약의 부활)

계약자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해서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일, 납입기간 및 만기일 등은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및 해지기간을 통산한 기간 만큼 순연됩니다.

제3조(부활보험료)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을 부활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계액이 부치일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부치가 발생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부활후 보험료
   제2조에 정한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1회분
2. 정산금액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해약환급금에서 해지된 순연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그 이자를 차감한 금액.
   단, 해약환급금과 그 이자는 순연전후 각각 해당계약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해 부활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4.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임 개시일부터 그 효

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5.전자거래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무배당 절약형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청약서, 보험약관 전부 및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이용한 자동납입이나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이하「신용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②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지정계좌로부터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③ 보험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⑤ 제4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후유장해지급율표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때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5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 귀의 청력이 50㎝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7) 한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5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0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6) 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진 때	34
17) 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때	20
18) 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 손의 5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 손의 첫때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 손가락마다)	8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30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손가락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 발가락마다)	5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1 발가락마다)	3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0 흉 · 복부장기의 장해	
1) 흉 · 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흉 · 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75
3) 흉 · 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0
4) 흉 ·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25
5) 흉 · 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10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42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11. 정신 · 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 · 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00
3) 정신 ·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75
4) 정신 · 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0
5) 정신 ·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25
6) 정신 ·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 귓바퀴의 연골부의 1/2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 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고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 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별표2】 해약환급금 예시표

※ 예시기준 : 5년만기

1. 일시납

(1) 기본계약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31,450	101,650	69,890	36,060	0

(2) 선택특약

1. 가족 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 특약(자가용 운전자용)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61,150	47,290	32,510	16,770	0

2. 가족 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 특약(비운전자용)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6,820	13,000	8,940	4,610	0

3. 가족 주말교통상해 의료비 담보 특약(자가용 운전자용)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50,000	39,050	27,100	14,100	0

4. 가족 주말교통상해 의료비 담보 특약(비운전자용)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4,000	10,930	7,590	3,950	0

5.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보상 특약

(상해1급,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43,660	33,770	23,220	11,980	0

6.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특약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31,350	24,240	16,670	8,600	0

7. 운전중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보상 특약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22,570	17,450	12,000	6,190	0

8.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담보 특약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870	1,450	1,000	510	0

9. 상해의료비 담보 특약

(상해1급, 가입금액 1백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12,590	88,480	61,790	32,360	0

10.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 특약

(가입금액 1백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81,400	63,970	44,670	23,390	0

11. 방어비용 담보 특약

(가입금액 1백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9,440	15,030	10,340	5,330	0

12. 차량손해위로금 담보 특약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8,450	14,270	9,810	5,060	0

13. 면허정지위로금 담보 특약

(일당 1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3,610	10,520	7,240	3,730	0

14. 면허취소위로금 담보 특약

(가입금액 1백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3,650	10,550	7,260	3,740	0

15.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특약

(일당 1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8,220	6,350	4,370	2,250	0

16. 생활유지비 담보 특약

(일당 1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25,140	19,440	13,370	6,900	0

17. 상해임시생활비 담보 특약

(상해1급, 일당 1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36,880	28,520	19,610	10,120	0

18. 교통상해 임시생활비 담보 특약

(일당 1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24,590	19,010	13,070	6,740	0

19. 뺑소니·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 특약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2,100	9,360	6,430	3,320	0

20. 영업용운전자 담보 특약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364,660	282,120	194,070	100,170	0

21. 가족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추가특약(자가용 운전자용)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61,030	47,210	32,480	16,760	0

22. 가족 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 추가특약(비운전자용)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6,780	12,980	8,930	4,610	0

23. 가족 주말교통상해 의료비 담보 추가특약(자가용 운전자용)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49,900	38,990	27,070	14,090	0

24. 가족 주말교통상해 의료비 담보 추가특약(비운전자용)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3,970	10,910	7,580	3,950	0

25. 운전중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보상 추가특약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87,700	67,850	46,680	24,090	0

26. 면허정지 위로금 담보 추가특약

(일당 1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3,580	10,510	7,230	3,730	0

27. 면허취소 위로금 담보 추가특약

(가입금액 1백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3,620	10,540	7,250	3,740	0

28.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추가특약

(일당 1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49,740	115,850	79,690	41,130	0

29. 생활유지비 담보 추가특약,

(일당 1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223,000	172,520	118,680	61,250	0

30. 방어비용 담보 추가특약

(가입금액 1백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174,720	135,170	92,990	47,990	0

31. 운전중상해 의료비 담보 추가특약

(가입금액 1백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225,770	177,510	124,030	64,980	0

32. 운전중상해 임시생활비 담보 추가특약

(일당 1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73,250	56,670	38,990	20,120	0

2. 전기납

(1) 기본계약

: 보험연도말 해약환급금 없음

(2) 선택계약

1. 상해의료비 담보 특약

(상해1급, 가입금액 3백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0	0	0	970	0

2.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 특약,

(가입금액 3백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0	0	0	660	0

3. 운전중상해 의료비 담보 추가특약

(가입금액 3백만원 기준)

경과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약환급금	0	0	0	1,890	0

나. 기타 특약 및 추가특약

: 보험연도말 해약환급금 없음

【별표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횡단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도로교통법 제19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제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내지 제20조의 제3항(끼어들기 금지) 또는 제56조(갓길통행금지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도로교통법 제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도로교통법 제24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도로교통법 제40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도로교통법 제41조(주취중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